

글로벌미래교육원 강사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22. 03. 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규정」 제13조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부설 글로벌미래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강사의 자격, 위촉 및 해촉, 복무, 처우, 징계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관련 운영규정 및 「경희대학교학칙」 제20장(학점은행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원의 학점은행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강사의 구분) ① 본원 소속 강사라 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된 자를 말한다.

- ② 강사는 상시 근무를 하지 아니하며,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른 지도 등을 맡는다.
- ③ 학점은행제의 학습자 지도 및 상담 등 학사관리의 원활화를 위하여 전공과정에 본원 자체로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주임강사’ 명칭의 자체 보직을 둘 수 있다.
- ④ 주임강사는 해당 전공 또는 과정의 운영 업무를 전담하고, 소속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진로 지도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 ⑤ 주임강사에 대하여 세부사항이 필요할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자격) 본원의 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단,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과정의 특성에 따라 원장이 그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위 촉 및 해 촉

제5조(위촉절차) ① 본원의 강사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심사하여 본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 1. 이력서
- 2. 학위증명서
- 3.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② 주임강사는 해당 전공 또는 과정의 강사·비전임·전임 또는 본교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본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촉기간) ①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주임강사는 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 1년 단위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단위 주임강사 평가에 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으나 재위촉은 1회에 한한다. 단,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본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강사는 1년 단위 강사평가 결과 득한 평점이 별도 본원 내부 기준에서 정한 일정 평점이상인 강사는 재위촉할 수 있으나 정기 학기로 계산하여 통상 4학기를 초과 위촉할 수 없다. 단, 교과과정, 원활한 수업의 연속성 및 학습권을 고려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위촉계약) ① 본원 소속 강사는 계약기간과 근로조건, 준수사항 등을 정한 계약서(별표1)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해당 강사의 학력, 경력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회 및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위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강사로 위촉할 수 없다.

1. 전 학기 출강시간이 총시간수의 3분의 2에 미달한 자
2. 전 학기 출강 중 강의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였거나 강의평가 결과가 저조한 자
3. 본원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본 대학과 본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4. 출입국관리법(외국인 강사)에 의거, 대학교육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5. 기타 원장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자

제9조(강의평가 및 강사평가) ① 본원은 위촉기간 만료 시 해당 기간에 개설된 교과목을 대상으로 수강생의 강의평가 및 행정실의 강사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촉(위촉 포함)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해촉)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강사가 임용기간 중 본원의 제규정에서 정한 임용 해지사유가 발생되거나 계약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
3. 신체·정신적 사유로 강의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와 관련하여 본원은 강사에게 대학병원급 이상의 병원을 지정하여 전문의 소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복무태도가 불량하여 본원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자
5.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를 준수하지 않거나 무단 결강횟수가 2회 이상인 자
6.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로 강의에 충실하지 못하고 교수능력이 부족하다 판단된 자
7. 담당 교육과정이 모두 폐강한 경우
8.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제재 등을 받아 본원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9. 계약 조건 또는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본교 또는 그 하부 기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치거나 운영·행정상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10. 제8조의 위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당해 교육과정 개강일 전 별도의 임용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당연 해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복 무

제11조(책임과 의무) 강사는 본원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고, 본교의 제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12조(강의시수 및 책임시수) ① 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는 본교 대학(원) 강의시간과 학점은행제 강의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강의시간 외 학생상담 및 강의준비는 강의가 개설되는 날, 강의 전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 단위 기준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타의 업무나 부가근로시간을 부여(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상기 외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결강과 보강) ① 강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장에게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강은 수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학기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휴직금지) 본원 소속 강사는 계약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

제15조(업무 협조) 강사는 본원의 담당 강의와 관련하여 학사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기간 종료 후라도 업무 협조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수 및 처 우

제16조(보수 지급액) ① 강사의 강사료는 본원의 시간강사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한다. 단, 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임강사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전공 또는 과정의 운영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수 지급일) 보수 지급일은 본교의 지급일로 한다. 단, 학점은행제 강의 진행 등 강의 일정에 따라 지급일을 변동할 수 있다.

제18조(처우) 강사의 기타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 5 장 징 계 등

제19조(징계) 강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계약기간 중에라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임사유의 정도에 따라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강사로서 서약한 바에 위배된 경우
4. 이 규정에서 정한 바를 위반한 경우
5.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경우

제20조(징계위원회 및 징계 재심위원회) ① 징계위원회는 본원 운영위원회로 한다.

② 징계 재심위원회는 본원 운영위원이 아닌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고, 원장은 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징계처분을 받은자가 징계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청구시 징계 재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① 강사가 위촉된 후 계약 조건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본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원은 해당 교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를 받은자가 본원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6 장 보 칙

제22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정관 및 본교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이미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당시 계약서의 효력은 본 규정 적용 시점 상호 합의 하에 수정할 수 있다.

[별표1] 강사 위촉 계약서

강사 위촉 계약서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강사 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갑”	성명		사업의 종류	교육
	소재지			
“을”	성명		전화번호	
	현주소			생년월일

제1조 (계약기간) “갑”은 “을”을 계약에 의한 강사로 위촉하며, “을”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의 통보 없이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제2조 (급여와 수당) ① 강의료는 시급으로 하며, 기준 강의료는 본원 강의료 기준표에 의하여 시간당 원으로 책정한다.

② “갑”은 매학기 개강일을 기준하여 4주 단위로 제①항, 제②항에 의해 계산된 강의료를 “을”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일에 지급한다.

③ “을”이 강의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갑”은 그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강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

④ 강의 이외의 일정 업무를 분장할 경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지침에 따른다.

⑤ 강의료 및 소정의 수당은 학생상담 및 강의준비 보수를 포함하며, 학생상담 및 강의준비 시간은 강의가 개설되는 날, 수업 전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 단위 기준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6시간을 초과하는 일체의 업무는 금지한다.

제3조 (복무 등 근무조건) ① “을”이 담당할 강의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과목	강의일	강의시간	강의료	기타
	매주 요일 : ~ : 시		시간당 원	매시간마다 10분 휴게시간
	매주 요일 : ~ : 시			
	매주 요일 : ~ : 시			

※ 임용시작일 이후 개설된 강의 시간표에 의함

② “을”은 본교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기관에서 본인이 담당하는 강의에 대하여 주단위 최대 6시간 내에서 강의 및 시험 등을 수행하며, 강의준비 및 학생상담은 수업 전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는 주 단위 기준 6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타의 업무나 부가근로시간을 부여(요구)하지 아니한다.

③ “을”的 근로시간은 제①항에서 정한 강의시간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근로시간은 일절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을”的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 및 휴가와 휴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강의 장소와 업무) ① “을”은 “갑”이 지정한 교육장소에서 강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장소 변경시 반드시 소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② “을”은 학점은행제 과정 강의 및 그에 따른 부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해촉 및 재위촉 거부 사유) ① “갑”은 “을”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가. 정관,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 다.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라. 전공이 폐지되었을 경우
- 마.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바.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사. 학점은행제 관련 법령 및 지침, 글로벌미래교육원 규정 및 글로벌미래교육원 강사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아. 수업 및 휴·보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자. 성적평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 차.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 카.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② “갑”은 “을”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위촉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담당 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
- 나. 소속 전공이 폐강한 경우
- 다.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규 전임강사를 채용한 경우
- 라. 계약으로 정한 해촉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6조 (준수사항) ① “을”은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의 교육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교육원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학점은행제 관련 법령 및 지침, 글로벌미래교육원 규정 및 글로벌미래교육원 강사에 관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이 평가인정 받은 사항(교재, 강의계획서 등)을 준수하여 강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업시간 준수 및 매 시간 출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는 수강생의 부당한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

⑤ 정해진 강의일자가 개교기념일을 비롯한 공휴일 등 학교에서 정한 휴업,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 “을”은 별도의 강의일자를 변경하여 보강을 실시하여 “갑”이 정한 강의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강 후 1주일 이내에 반드시 보강 완료하여야 한다.)

⑥ 실습 과목(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실습)을 담당하였을 경우, 소관 부처의 실습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공공기관 겸직을 할 경우, 반드시 재직증명서와 겸직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출강일과 담당시수) “갑”과 “을”은 상호 협의를 통해 강의 요일과 담당과목을 정하며 담당시수는 글로벌미래교육원 강사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다.

제8조 (계약 해지 및 변경) “강사”는 위촉과 관련하여 “대학”에 제출한 서류 중에 허위사실이나 허위서류가 있을 경우, 폐과 등 교육과정 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위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재위촉 및 계약의 해지) “을”은 글로벌미래교육원 강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재위촉 절차에 따르며 “을”이 해촉 및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한다.

제10조 (기타 계약 조건) ① “을”은 본 대학 법인과 대학의 제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③ 대학 법인과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법정의무교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④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 제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 ⑤ 계약 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관할 법원은 본 대학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 ⑥ “을”은 본 대학에 계약기간 중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제3자에게 알리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을”은 본 계약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이의가 없으며, 본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내용과 관련규정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각 계약서 1부씩 보관한다. 향후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 및 행정상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갑 : (대학)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장 (인)

을 : (강사) 계약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